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1. 21 선고 2023가단10005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김진수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지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고은

변 론 종 결 2023. 10. 24.

판 결 선 고 2023. 1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2022. 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138,150,684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8,150,68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 C,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촉탁으로, 2015. 11. 13. D가 원고에게 7,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함을 확인하고 이를 분할 변제하기로 하되, 변제가 지체되는 경우 지연손해금율은 연 20%로 하며, C이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15. 11. 13. 작성 증서 2015년 제604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의 부동산 취득 및 매각

1) 피고는 2022. 2.경까지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감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2) 피고는 2022. 4. 28. 부산 남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22. 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27억 원)를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 I에 채권최고액 10억 8,9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2023. 3. 11. 이 사건 아파트를 25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23. 3. 28.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138,150,684원에 이른다. C은 2022. 2. 28.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의 운영수입 16억 1,100만 원을 동거인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위 증여가 없었다면 가정주부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8,150,68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갑 제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처럼 C이 2022. 2. 28. 피고에게 16억 1,100만 원을 증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증여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청구 기각

판사 정왕현